

최근개정 : 2025. 2. 26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유아교육법, 초·중등교육법,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목원대학교(이하"본교"라 한다)의 학생이 졸업 후 정교사(2급)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

이 규정은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과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어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설치학과)

본교는 별표 1과 같이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(전공)를 둔다.[2012.05.02.개정][2017.07.19.개정, 2020.9.23. 2021.7.14.]

제2장 교원양성위원회

제4조(교원양성위원회)

-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3장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의 선발

제5조(대상 학과)

제3조에 의한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제6조(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의 선발)

- ①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학과의 전공별 승인 인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.[2017.07.19.개정][2018.05.30.개정, 2020.9.23.]
 1. 총 평점평균이 높은자 <개정 2020.9.23.>
 2. 전공 평점평균이 높은자<개정 2020.9.23.>
- ② 교직과정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2020.9.23.>
 1. 학칙 제68조에 따른 징계처분 받은 학생<신설 2020.9.23.>
 2. 학칙 제50조에 따른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<신설 2020.9.23.>
 3.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에 불합격한 학생<신설 2020.9.23.>
- ③ 유치원 및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④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이수 자격은 취소된다.<신설 2020.9.23.>
 - 가. 학칙 제31조에 따라 퇴학하는 경우<신설 2020.9.23.>
 - 나. 학칙 제32조에 따라 제적되는 경우<신설 2020.9.23.>
 - 다. 교직이수를 포기하는 경우<신설 2020.9.23.>
 - 라. 교직과정 미설치 학과(전공)로 전과할 경우<신설 2020.9.23.>
- ⑤ 사범대학 학생이 사범대학으로 전과한 경우 원 교직이수 자격이 취소되며, 비사범대학으로 전과한 경우 교직이수 자격이 취소된다.<신설 2020.9.23.>
- ⑥ 학과 통폐합 등으로 교직과정이 폐지된 학과(전공)로 복학 및 재입학하는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할 수 없다.<신설 2020.9.23.>

제4장 교직과정의 이수

제7조(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 기준과 학점)

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별표 3에 의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전공과목 이수)

- ①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 학과의 전공은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4조제3항 같은 영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.[2011.8.24.개정, 2020.9.23., 2024. 7. 10., 2025. 2. 26.]
- ② 학과(전공)별 기본이수 과목은 별표 6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.[2011.3.23.개정][2011.8.24.개정][2015.04.08.개정][2015.06.17.개정][2017.07.19.개정][2020.02.07.별표개정, 2020.9.23. 2021.7.14. 2021.12.15. 2022.3.9.]

제9조(교직과목 이수)

본교의 교직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.[2013.4.17.개정][2014.4.23.개정][2017.07.19.개정, 2020.9.23.]

1. 영역별 이수학점은 별표 2와 같다.<개정 2020.9.23. 2021.7.14.>
2. 학기별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.<개정 2020.9.23. 2021.7.14.>
3. 제1호의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.

제5장 교 육 실 습

제10조(학교 현장실습)

- ① 학교 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학교 현장실습을 실시한다.
- ②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학교 현장실습 소요경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③ 학교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이 수강하는 과목은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④ 실습 결과보고서는 학과(전공)별로 철하여 3년간 보관한다.
- ⑤ 학교 현장실습 학점은 실습학교 50%, 교과 담당 교수 50%로 환산한다.
- ⑥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관계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,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20.9.23.>
- ⑦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자격 종별에 관계없이 학교 현장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.[2017.07.19.개정]

제11조(교육봉사활동)

- ①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(2학점)을 이수하여야 하며, 수강과목은 졸업 학기에 편성 운영한다.<개정 2021.7.14.>
- ② 삭제<2021.7.14.>
- ③ 삭제<2021.7.14.>
- ④ 교육봉사활동은 1학년 1학기에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시간이 명시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7.14.>
- ⑤ 교육봉사활동은 재적기간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<신설 2021.7.14.>

제6장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

제12조(무시험검정 대상)

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졸업예정자는 매 학기 말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[2016.05.25.개정, 2020.9.23. 2021.7.14.]

1.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
2. 제9조에서 정한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
3. 별표 4의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이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<개정 2020.9.23.>
4.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"적격" 판정을 받은 자<개정 2021.7.14.>
 - 가.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: 1회 이상<개정 2021.7.14.>
 - 나.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: 2회 이상<개정 2021.7.14.>

5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

가. 2017년 2월 졸업자까지 : 1회 이상<개정 2021.7.14.>

나.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부터 : 2회 이상<개정 2021.7.14.>

6. 성인지 교육 이수자<신설 2021.7.14.>

가.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: 2회 이상<신설 2021.7.14.>

나.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: 4회 이상<신설 2021.7.14.>

다.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<신설 2021.7.14.>

제13조(성적 기준)

- ①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교직과정 이수 학과 학생 중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
- ②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2학년도까지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이어야 한다.
- ③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75점, 교직과목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제7장 복수(부)전공

제14조(복수전공)

- ①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 자격 취득은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만 가능하다.
- ② 학과별 복수전공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.[2017.07.19.개정]
 - 사범대학 : 입학 학년도의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% 이내
 - 교직과정 설치학과 : 입학 학년도의 학과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
- ③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별표 5와 같이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복수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<개정 2020.9.23. 2021.7.14.>

제15조(부전공)

- ①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별표 5의 전공과목 및 부전공과목,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로서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만 부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<개정 2020.9.23. 2021.7.14.>
- ②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
부 칙

(1)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은 폐기하며,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(2)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(3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(4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(5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(6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(7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(8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(9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은 2015-1학기부터 적용한다.

(10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(11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(12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본 규정 제3조에 의한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변경된 표시 과목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, 경영학과, 무역학과의 교직과정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폐지한다.

(13)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규정 제91114호,2020.02.07.일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개정 규정 이전에 시행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칙(규정 제200074호,2020.09.23.일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

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- ① 이 개정규정 제3조에 의한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변경된 표시 과목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, 영어영문학과 및 서비스경영학부-경영정보전공의 교직과정은 2021학년도 신입학생부터 폐지한다.
- ② 이 개정규정 제10조제6항은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규정 제21228호,2021.07.14.일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- ① 이 개정 규정 제9조(교직과목 이수)제1호, 제2호는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(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) 부터 적용한다.
- ② 제12조(무시험검정 대상)제6호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,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자는 성인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칙(규정 제21247호,2021.12.15.일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개정 규정은 제8조제2항의 별표 6 중 중국어중국학과는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(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)부터 적용 및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(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)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규정 제21260호,2022.03.09.일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22310호,2023.02.27.일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개정 규정 제6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규정 제24218호,2024. 7. 10.일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24251호,2025. 2. 26.일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